

의안번호	제 283 호
의결년월일	1995. 5. 27. (제 33 회)

의결 사항	의안
	가결



###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(안)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년월일	1995. 5. 19.

##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의안번호	283
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1995. 5. 19.

제 출 자 : 고 성 군 수

### 1. 제안이유

-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정원조치와 관련하여 95.7.1 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 제14480호) 제20조 규정에 의거 승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선 보완코자 함.

### 2. 주요골자

- 지방정무직공무원 정원승인 : 1명 (군수)
  - 정원시행일 : 1995년 7월 1일
  - \* 참고자료 : 지방12200~663(95.5.12) 지방자치단체장 정원승인

### 3. 본 문

고성군조례 제 호

##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(안)

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본청 : 232명

부 칙

이 조례는 1995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군의 본청·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본 청 : 231명</p> <p>2. 직속기관 : 92명</p> <p>3. 사업소 : 17명</p> <p>4. 읍 면 : 288명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현행과 같음</p> <p>1. 본 청 : 232명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